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
(고인돌 공원부지 매입)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. 10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0. 11. 16

다. 상 정 일 자 : 2000. 11. 16

(제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재무과장 김 종 철

나. 제안사유

○ 국가사적 제410호로 지정된 화순 효산·대신리 지석묘군 선사 유적지내의 고인돌 밀집 지역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유물 발굴 및 공원을 조성하는 등 문화유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○취득(매입)대상토지

매입 대상 토지 소재지			지목	취득예정 면 적	취득예정가액 (공시지가)	비고
읍면	리	번지		(㎡)	(천원)	
계		7필지		5,968	52,434	
도곡	효산	87-1	전	988	6,619	
		87-3	전	965	6,275	
		87-4	전	777	5,361	
춘양	대신	269-3	전	665	6,650	
		269-5	답	992	10,615	
		269-6	답	673	7,201	
		269-8	답	908	9,716	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양정열)

○ 본 승인안은 국가사적 제410호로 지정된 도곡.춘양 지역의 고인돌 밀집지역 사유지를 매입, 유물 발굴 및 공원조성을 위하여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·승인 요청한 의안으로써,

○ 도곡.춘양 지역의 고인돌 밀집지역은 그동안 학계와 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온 지역으로써 금년 말 개최될 "세계 유산 위원회"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확실시 되고 있는 지역으로 필요한 지역(면적)은 가급적 빨리 매입하여 문화재 보존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임.

○ 금번 매입코자 하는 면적은 5,968㎡이나 세계 문화유산 지정 또는 고인돌 관련 문화재 발굴 및 보존에 필요한 충분한 면적이 공유재산으로 확보 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,

○ 특히 지방재정법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당초 예산 편성 이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임.

4. 질의 답변 요지

"생 략"

5. 토론요지

"생 략"

6. 심사결과

"원안의결"

첨 부 :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
(고인돌공원 공원부지 매입)

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0. 11.

제 출 자 : 화순군수

1. 제안사유

국가 사적 제410호로 지정된 화순 효산·대신리 지석묘군 선사유적지내의 고인돌 밀집 지역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유물 발굴 및 공원을 조성하는 등 문화유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○ 취득대상토지

매입 대상 토지 소재지			지목	취득예정 면 적	취득예정가액 (공시지가)	비고
읍면	리	번지				
계		7필지		(㎡) 5,968	(천원) 52,434	
도곡	효산	87-1	전	988	6,619	
		87-3	전	965	6,275	
		87-4	전	777	5,361	
춘양	대신	269-3	전	665	6,650	
		269-5	답	992	10,615	
		269-6	답	673	7,201	
		269-8	답	908	9,716	

3. 취득사유

지석묘군 사적지내의 문화재 발굴 및 선사유적 및 선사유적 공원 조성과 문화유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

4. 관계법령

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